

10·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(약칭: 10·27법난법)

[시행 2023. 8. 8.] [법률 제19592호, 2023. 8. 8., 타법개정]



문화체육관광부(중무1담당관) 044-203-2313

제1조(목적) 이 법은 10·27법난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3. 8. 8.>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3. 8. 8.>

1. “10·27법난”이란 1980년 10월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이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대한불교 조계종의 승려 및 불교 관련자를 강제로 연행·수사하고, 포고령 위반 수배자 및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구실로 군·경 합동으로 전국의 사찰 및 암자 등을 수색한 사건을 말한다.
2. “피해자”란 10·27법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또는 부상 및 장애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.
3. “피해종교단체”란 10·27법난으로 인하여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당한 대한불교 조계종 및 10·27법난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을 말한다.

제3조(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) ① 피해자 또는 피해종교단체(이하“피해자등”이라 한다)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10·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6. 2. 3.>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 <개정 2013. 5. 22., 2016. 2. 3.>

1. 삭제 <2016. 2. 3.>
 2. 피해자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
 3.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
 4. 10·27법난 기념관 건립에 관한 사항
 5. 그 밖에 피해자등의 명예회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에 관한 사항
-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④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<개정 2016. 2. 3., 2023. 8. 8.>
-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조의2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[본조신설 2018. 12. 24.]

제4조 삭제 <2016. 2. 3.>

제5조(의료지원금) ① 10·27법난으로 인하여 부상 및 장애를 입은 사람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부상 및 장애로 인하여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시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치료·간병 및 보조장구의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. 다만, 10·27법난 당시 연행되어 다른 위법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. <개정 2021. 5. 18., 2023. 8. 8.>

- ② 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.
- ③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.
- ④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6조(의료지원금의 환수) ① 국가는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의료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8. 8.>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
 2. 잘못 지급된 경우
- ② 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금을 반환할 사람이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. <개정 2023. 8. 8.>

제7조(사실조사 등) ① 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피해자·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.

<개정 2023. 8. 8.>

② 누구든지 피해자등의 명예회복과 의료지원금의 지급 및 환수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고, 그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.

부칙 <제19592호, 2023. 8. 8.> (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)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